

조항	변경전	변경후
제9조 (환불, 유효기간 등)	① 회사는 사전에 경기지역화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,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. 모바일카드의 경우 -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 2. 실물카드의 경우 - 실물카드에 기재된 기간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처리합니다. 1. 모바일카드의 경우 -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(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 능한 경우로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). 단,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 용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·충전금액 잔액을 환불합니다. 2. 실물카드의 경우 -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고, 유효기간 만료 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갱신 의사를 확인 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.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 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 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,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,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규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.	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표면과 앱내 카드정보에 기재됩니다. ② 카드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유효기간을 연장 됩니다. ③ '회사'는 ②항에 따라 유효기간 자동연장 관련하여 유효기간 도래전6개월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서면, 전화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메시지(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모바일 메시지를 포함하며, 모바일 메시지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)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 1. 카드의 유효기간 자동 연장 예정사실 ④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직접 충전한 금액, “인센티브”, “캐시”, “정책수당” 등의 유효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실물카드 및 모바일카드에 기재된 기간과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.